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39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이병해 의원(찬성자 16명)

나. 제출일자 : 2017년 2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병해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년 5월)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다양성 시책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3)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4)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협력체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5) 시장은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나라가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고 서울 또한 다문화도시로 접어들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화현상으로 대두된 다문화 현실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이 아닌 공존을 의미함.

○ UNESCO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발효하였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서울시는 이미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별첨 1), 다가올 문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집단의 특색 있는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전을 구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더욱 향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포함시키자는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나,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그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다르고,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이 목적이나 정책의제에서 문화다양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이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임.

〈표 1〉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지방자치단체	조 례 명	최초 시행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1.01.
경기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13.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01.
목포시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2.13.

다. 조례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동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16개조에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6개의 조문은 대부분 모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 기술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2〉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연번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1	제1조	목적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도시 실현
2	제2조	정의	문화적 관용을 정의
3	제3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존중, 문화적 관용
4	제4조	시장의 책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시책,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
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6	제6조	실행계획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매년 수립
7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운영방법 등
8	제8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구성
9	제9조	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촉 근거, 역할, 권한
10	제10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 조사 내용, 등
11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2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
13	제13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14	제14조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협력기구 운영 및 지원
15	제15조	권고 등	문화적 차별 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
16	제16조	포상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이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은 제외하고, “문화적 관용”에 대해 정의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적 관용을 인정하고 보장하되 건전한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내용은 관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4조와 동일한 내용임.

○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으로 하여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안 제6조(실행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문화다양

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분과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있으며, "201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2016.3.30.)에서 분야별 전문연구 및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전문위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계 담당부서의 장인 공무원과 전문가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3〉 안 제7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안 제10조(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이들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음.

○ 안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은 문화다양성, 문화적 관용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안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 간에 화합과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권고 등)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시정 혹은 개선 등 권고(행정지도)와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비록 권고라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는 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정형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으나(다수설·판례), 권고의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것임.

다만,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여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추구하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1)]

○ 안 제16조(포상)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표 4〉 안 제16조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
제16조**(포상)**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와 같이 조성적 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따른 자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기술적 지원 방안 등과 함께 규정한 사례도 있음.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시장의 실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고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이 국내 타 지역은 물론 세계 다른 도시와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소득 계층 간, 세대 간, 서울 내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위원회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포상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함(안 제7조제4항제3호)

○ 포상 규정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16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39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위원회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포상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함(안 제7조제4항제3호)

○ 포상 규정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안 제16조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안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제16조**(포상)**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